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대상지역 확대〉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85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5.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 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도 경상남도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2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이나 원자력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 ② (생략) ¹⁾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 제2항 ²⁾ 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당----- -----. ----- ----- -----.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3)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 <u><신 설></u> <u><신 설></u> ④ (생략)⁴⁾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생략)⁵⁾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2.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 나. 해당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서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군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해당----- -----, ----- ----- -----.

현행	개정안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u><신 설></u> <u><신 설></u> ③ (생략)⁶⁾	1. (현행과 같음) 2. ----- -----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구</u> 가. <u>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u> 나. <u>해당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로서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이 아닌 자치구</u>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20조의2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

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

4)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④ 시·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5)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6)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① “원자력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방사선비상 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

당초 원자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징수한 후 그 65%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였음. 그러나 i) 발전소 소재 시·군과 자치구 간의 형평성, ii) 발전소에 인접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7)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2024년 2월 1일 i) 발전소 소재 시·군 외에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ii)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법률 제20316호 지방재정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4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20조의2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

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분배 기준 변동 내역]

구분		2024.2.20 전	2024.2.20 이후
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조정교부금)	시·군	세액의 65%	세액의 65%
	자치구	-	세액의 65%
발전소 인접 기초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 소속	-	세액의 20% 이하 (조례로 결정)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 비소속	-	-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 (징수세액)		- 발전소 소재지가 시·군: 세액의 35% - 발전소 소재지가 자치구: 세액의 100%	세액의 15~35% (조례로 결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이에 개정안은 「법률 제20316호 지방재정법」 의결 당시 포함되지 않은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세액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i) 국회에서 「법률 제20316호 지방재정법」을 의결할 당시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을 조정교부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에만 주는 것이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일 뿐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었고,

ii) 이에 국회는 「법률 제20316호 지방재정법」을 의결하면서 “행정안전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하여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② “원자력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원자력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별개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i) 우선 개정안과 같이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교부받는 “세액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에도 교부하는 방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간 지원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다만, 이는 한정된 재원을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외에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에도 분배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전자와 후자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원자력발전소별 관련 기초자치단체 현황]

구분		월성	고리	새울	한울	한빛
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 현행법상 조정교부금: ○ (세액의 65%)		(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내 기초자치단체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 소속 ※ 현행법상 조정교부금: ○ (세액의 20% 이하로서 조례로 결정)	(경북) 포항시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울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북) 봉화군	(전남)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 비소속 ※ 현행법상 조정교부금: X	(울산)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남) 양산시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전북) 고창군 부안군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ii) 다음 「법률 제20316호 지방재정법」 국회 의결시 부대의견에 따라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재정지원 방안으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편성중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⁸⁾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며, 전술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회피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⁹⁾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법률 제20316호 지방재정법」 국회 의결시 부대의견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므로,¹⁰⁾ 개정안 심사에 앞서 이를 청취·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333

8) 일반회계 방재환경기반구축 세부사업(1402-402)의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지원 내내역사업 (2024년 예산 10억 1,300만원) 및 방사능재난 시 주민보호를 위한 방호약품 구매 내내역사업 (2024년 예산 7억 4,800만원) 등

9) 그 밖에, 국회가 「법률 제20316호 지방재정법」을 의결할 당시 조정교부금 범위 확대 대상에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시키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광역자치단체 세목이며 이를 조정교부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보전해주기 때문이므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 발전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전환하여 제도의 체계 전체를 재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0) 국회사무처, 「제411회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위원장님: (중략) 방금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만 특별교부세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은 있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재정당국하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